## [별표 5] <개정 2010.8.19>

## <u>과 태 료 부 과 기 준</u> (제6조 관련)

부 과 항 목	금 액(만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1.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기준 및 방법에 위반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한 자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제24조의3제4항]			
가. 수집 · 운반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는 경우			
(1) 폐기물을 종류별·성상별로 구분·배출된 것을 정당한 사유없이 혼합하여 수집·운반하는 경우	300	500	700
(2) 적정처리·보관 장소외의 곳으로 운반하는 경우	500	700	1,000
(3) 폐기물수집·운반차량 외의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거나 폐기물의 종류별로 정한 전용운반차량으로 운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300	500	700
(4) 운반차량의 적재함에 덮개를 덮지 아니하는 경우(덮개를 설치하여야 하는 차량에 한한다.)	300	500	700
(5) 폐기물을 흩날리거나 누출 또는 침출수를 유출시키는 경우	300	500	700
(6) 전용의 용기 등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운반하는 경우	300	500	700
(7) 그 밖에 의료폐기물의 수집·운반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는 경우	500	700	1,000
(8) 폐기물수집·운반증을 부착 또는 휴대하지 아니하고 운반 하는 경우	200	300	500
(9) 그 밖에 수집·운반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는 경우 (가) 생활폐기물의 경우 (나) 사업장폐기물의 경우 (지정폐기물을 제외한다) (다) 지정폐기물의 경우	50 200	70 300	100 500
	300	400	600
(10) 운반차량을 도색하지 아니하거나 폐기물 수집·운반차량명, 회사명 등을 규정대로 표기하지 아니한 경우	200	300	500
나. 보관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는 경우			
(1) 보관기간을 경과하는 경우 (가) 1일 이상 1개월 미만 경과시	200	400	600
(나) 1월 이상 3개월 미만 경과시	400	600	800
(다) 3개월 이상 경과시 (2) 페기무용 조르병, 서사병로 그부참여 보고참기 하나하는 겨우	1,000	1,000	1,000
(2) 폐기물을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 생활폐기물의 경우	10	20	30
(나) 음식물류 폐기물(사업장폐기물인 경우에 한한다)의 경우	100	200	300
(다) (가) 및 (나)를 제외한 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인 경우	200	400	600
(라) 지정폐기물의 경우	500	700	1,000

부 과 항 목	금 액(만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3) 적정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 생활폐기물의 경우 (나) 음식물류 폐기물 (사업장폐기물인 경우에 한한다)의 경우 (다) (가) 및 (나)를 제외한 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인 경우 (라) 지정폐기물의 경우	10 100 200 300	20 200 400 700	30 300 600 1,000
(4) 삭제			
(5) 보관 표지판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표지판의 내용을 허위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는 경우	100	200	300
(6) 의료폐기물의 전용용기에 표기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200	300
<ul><li>(7) 그 밖에 보관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는 경우</li><li>(가) 생활폐기물의 경우</li><li>(나) 사업장폐기물의 경우 (지정폐기물을 제외한다.)</li><li>(다) 지정폐기물의 경우</li></ul>	50 200 200	70 300 400	100 500 600
다. 처리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는 경우			
(1) 매립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여 처리하는 경우	500	700	1,000
(2) 소각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여 처리하는 경우	400	600	800
(3) 재활용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여 재활용하는 경우 (가) 폐기물재활용신고자가 위탁받은 폐기물을 처리기간 내에 처리 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삭제	400	600	800
(다) 폐유를 정재연료유로 재활용하고자 할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4호다목2)나)(4)에 해당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	700	1,000
(4) 그 밖에 처리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여 처리하는 경우 (가) 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의 경우 (나) 지정폐기물의 경우 2. 삭제	500 500	700 700	1,000 1,000
3. 삭제			
4.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 제25조제9항) 가. 폐기물수집·운반전용차량으로 폐기물외의 물건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300	500	700

부 과 항 목	금 액(만원)		<u></u> 안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나. 위탁계약서를 작성·체결 및 보관에 관한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1) 위탁계약서를 작성・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700	1,000	
(2) 운반단가(운반비)·처리단가(처리비)또는 운반·처리장소의 내용을 누락 또는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500	700	1,000
(3) 운반단가 (운반비)·처리단가(처리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작성하는 경우(배출자, 수집·운반업자와 처리업자가 하나의 계약서로 계약체결하거나 폐기물수집·운반업자가 수집·운반 외에 처리까지 계약 체결하여 공공처리시설에 반입하는 경우에 한한다)	500	700	1,000
(4) (2)의 내용 외의 사항을 누락 또는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300	500	700
(5) 위탁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	700	1,000
다. 삭제			
라. 폐기물수집·운반업자가 공공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로서 그 처리비를 기일 내에 사후 정산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	700	1,000
마. 위탁받은 폐기물을 그대로 재위탁하는 경우(수집·운반업자의 경우에는 수집·운반을 재위탁하는 경우를 말한다)	700	1,000	1,000
바. 폐기물수집·운반업자가 승인받은 보관범위를 초과하여 보관하는 경우			
<ul><li>(1) 보관기간을 초과하는 경우</li><li>(가) 3일 미만 초과시</li><li>(나) 3일 이상 초과시</li></ul>	300 500	500 700	700 1,000
<ul><li>(2) 보관량을 초과하는 경우</li><li>(가) 150톤 (100㎡)미만 초과시</li><li>(나) 150톤 (100㎡)이상 초과시</li></ul>	300 500	500 700	700 1,000
(3) 보관장소가 동일 시・도에 2개소 이상인 경우	1,000	1,000	1,000
사. 수집·운반 및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수집·운반 및 처리위탁을 받는 경우			
(1) 50퍼센트 미만 초과시	300	500	700
(2) 50퍼센트 이상 초과시	500	700	1,000
아. 인수받은 폐기물을 30일(의료폐기물은 7일) 이내 처리하지 아니 하는 경우	500	700	1,000
자. 그 밖에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200	300	500

부 과 항 목	금 액(만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5.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유지.관리하였거나, 폐기물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측정 또는 주변지역 영향조사를 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가. 중간처리시설중 소각시설의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유지·관리하는 경우			
(1)연소실의 출구온도를 규정온도 이상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200	500	1,000
(2)연소실의 연소가스가 규정 시간이상 체류하지 아니하는 경우	200	500	1,000
(3)바닥재가 감열감량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200	500	600
(4)그 밖에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유지·관리하는 경우	100	300	500
6. 폐기물의 전자인계서를 제때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입력한자 (법 제18조제3항 또는 제24조의3제2항) 가. 제때에 전산입력을 하지 아니한 경우 나. 내용을 부실하게 입력한 경우	10 10	20 20	300 50
7.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를 한 자 또는 재생처리신고를 한 자가 변경신고를 아니한 경우 (법 제29조제3항 또는 제46조)	100	200	300
8. 지정폐기물의 처리증명서류를 지니지 아니하거나 내 보이지 아니한 지정폐기물의 운반자 (법 제19조제1항 또는 제24조의3제3항)	300	300	300
9.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폐기물처리업자 또 는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법 제37조)			
가. 폐기물처리업자의 경우	300	300	300
나. 폐기물재활용신고자의 경우	100	100	100
10. 폐기물의 수집장소·설비 또는 허가·승인받은 매립시설 외의 곳에 생활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매립, 소각 포함)를 한 자(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			
가. 별도기구 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담배꽁초, 껌, 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	3	3	3
나. 간이보관기구(비닐봉지, 천보자기 등)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 는 행위	20	20	20
다. 조례 제2조제6호의 대형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10	15	20
라.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아니하는 경우	20	20	20
마. 차량・손수레 등 별도 운반 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40	60	100

부 과 항 목	금 액(만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바. 사업활동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건축폐재류 등)을 버리는 행위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법 제25조에 따른 폐 기물처리업자 및 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재활용신고자가 사업장폐 기물을 버리는 행위를 제외한다)	100	100	100
사. 폐기물을 불법 소각한 자 등	20	40	100
11. 청결유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 는 관리자 (법 제8조제3항)	30	70	100
12. 폐기물을 생활환경보전에 적합하지 않게 처리하거나 감량하여 배출 하지 아니한 자(법 제15조제1항)			
가. 삭제 나. 조례 제11조제2항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3. 폐기물을 조례에서 정한 종류, 성상별로 분리·보관·배출하지 아니한 자(법 제15조제2항)	10	20	50
가. 조례 제11조제1항 규정을 위반한 자	10	20	50
나.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 중 (1) 관급규격봉투를 묶지 않고 배출하는 자 (2) 관급규격봉투가 아닌 봉투에 쓰레기를 담아 배출하는 자	5 10	5 20	5 50
다. 조례 제18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5	5	5
14. 삭제			
15. 폐기물처리시설 사용개시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법 제29조제4항)	100	100	100
16. 기술관리인을 임명하지 아니하거나 기술관리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아 니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을 유지·관리한 자(법 제34조제1항)	300	500	1,000
17. 교육을 받지 아니한 기술요원, 기술관리인, 폐기물처리담당자 또는 그를 고용하고 있는 자 (법 제35조제1항 또는 제2항)	20	40	100
18.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한 자(법 제39조제1항)	30	50	100
19.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법 제39조제1항)	100	100	100
20.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종료 또는 폐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법 제50조 제1항)	100	100	100

<sup>(</sup>주) 1. 위반행위가 2이상일 때는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sup>2.</sup> 위반행위의 횟수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한도에서 산입한다.